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29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허성무・정혜경・이정헌
박선원・김정호・김종민
유동수・소병훈・김남근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정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2호, 제32조의2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를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2조의2제5항”을 “제32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제17호 중 “제32조의2제5항”을 “제32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2.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그----------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시설 및 서비

	스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 ---------- ---------- ---------- ---------- ---------- ---------- ---------- ---------- ---------- ---------- ---제32조의2제6항---------- ---------- ---------- ---------- ---------- ---------- ---------- ---------- ----------. --- ----------

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	----------

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 ---------- ---------- ----------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 ---------- ---------- ----------.
1. ~ 16의6. (생 략)	1. ~ 16의6. (현행과 같음)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6항---------- ---------- ----------
18. ~ 28. (생 략)	18. ~ 28. (현행과 같음)